

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
【2023. 6. 23.(금) 10:00】

기획재정국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(통합재정안정화기금)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행 정 · 재 무 위 원 회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(통합재정안정화기금)

2023년 6월 23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기금 설치 개요

- 기 금 명: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¹⁾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설치목적: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
- 설치년도: 2021년
- 소관부서: 기획예산과

2. 기금 조성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
	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통합재정 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48,968,381	23,333,925	22,295,000	1,038,925	50,007,306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00억 73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,892만 5천원이 증액 되었음

1) <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>

구 분	조성재원	기금용도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- 예탁금 원금·이자수입 등	- 다른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- 예수금 원금·이자 상환 등

3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◆ 기금운용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목	수입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72,302,306	49,482,127	22,820,179
예치금회수	48,968,381	48,968,381	0
예수금	21,886,001	0	21,886,001
이자수입	1,447,924	513,746	934,178

○ 수입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494억 8,212만 7천원 대비 228억 2,017만 9천원이 증가한 723억 230만 6천원으로

- 예수금은 일반회계에서 205억 1,849만 4천원,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 6,750만 7천원 총 218억 8,600만 1천원의 여유자금을 예수
- 이자수입 9억 3,417만 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함

◆ 기금운용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72,302,306	49,482,127	22,820,179
예치금	50,007,306	27,187,127	22,820,179
예수금원리금상환금	22,295,000	22,295,000	0

○ 지출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494억 8,212만 7천원 대비 228억 2,017만 9천원이 증가한 723억 230만 6천원으로 예수금 및 이자 수입 전부를 통합계정에 예치하고자 함

4. 종합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예치금) 지출액을 당초(271억 8,712만 7천원) 대비 83.94%, 228억 2,017만 9천원을 증액하여 500억 730만 6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하게 되어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이자수입 228억 2,017만 9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- 다만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구금고에 과도하게 예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 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▪ 특정사업 운영 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경예산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